I.SEOUL.U

나와 너의 서울

-재난발생시 긴급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-노원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및 협력관 구성계획



노원소방서 (재난관리과)

긴급대응기관 협의회 및 협력관 구성계획

재난발생시 긴급구조 책임기관의 장과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원구 긴급대응기관 혐의회 구성 계획임

Τ	관련근거

□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52조의 2(기급대응협력관	「재나 및 이저과리기보번,	제52조의	2 (기급대응형력과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

-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제61조의 2(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·운영)
- □ 「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정」(소방청 고시 제2019-43호)

<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(제7조 1항)>

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

재난안전법 제52조의2(긴급대응협력관)

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 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- 1.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
- 2.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

Ⅱ 운영 목적

- □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인력·장비·물자의 조달 및 운용
- 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보유자원관리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협의
- □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사항 협의

Ⅲ 운영 개요

□ 협의회 구성

○ 위원장: 재난관리책임의 장(구청장)

- 위 원: 긴급구조지원의 장(8개 기관)
- 간 사: 긴급구조기관의 장(소방서장)
- 횟 수: 연 1회 이상(간사가 위원장에게 요구)
- 협의회 기능
-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
- 재난대비 훈련 및 기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
-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·장비 정보 공유 방안 등
- □ 구성조직도(위원장 1명, 위원 8명, 간사 1명)

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				
위원장	구청장			

긴급구조기관의 장간사소방서장

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	

소 속			직 책	비고
1	위원	노원경찰서	경찰서장	
2	위원	노원보건소	보건소장	
3	위원	한국전력(노원도봉지사)	지사장	
4	위원	KT노원지사	지사장	
5	위원	원자력의학원(병원)	병원장	
6	위원	상계백병원	병원장	
7	위원	을지병원	병원장	
8	위원	대륜 E&S	대표자	

- □ 긴급대응 협력관 구성(14개 기관)
 - 비상연락책임관: 노원구청 등 14개 기관
 - 횟 수: 연 2회(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 실시 가능)
 - 상반기: 5월 / 하반기: 10월(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)
 -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 회의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통보
 - 긴급대응협의관의 임무
 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
 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
 -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·장비 정보 공유 방안

-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기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
- 변경통보: 긴급구조지원의장
- 협력관을 지장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간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

붙임 긴급대응협의체 및 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. 끝.